

외국의 수입규제 제도와 우리의 대응 전략

목 차

- 1. 서 언
- 2. 양계산물의 국제무역 동향과 세계각국의 농축산물 국경보호 조치
- 3. 수입규제 제도
- 4. 일본을 중심으로한 외국의 수입규제 사례
- 5.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대응전략

1. 서 언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이란 당시 일찍 산업이 발전하여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확립된 이론이며, 수입자유화의 기본원리중의 하나인 비교우위론의 창시자인 D. Ricardo도 당시 선진국인 영국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이란 강자의 무기이며 약자에게는 두려운 대상인것으로 알려져 왔다. 19C 중엽 당시 유럽에서 후진국에 속해있던 독일에서 F.리스트에 의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이 체계화 되었는데 주내용은 외국 상품의 덤핑을 방지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나 국가에 따라 비교우위론도 보호무역도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시좌의 차이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무역은 협상무역(Negotiated Trade)시대로 접어들어 상호주의에 의한 철저한 Give and Take의 규칙과 힘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80년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국들이 우리에게 수입을 요구하는 품목이 주로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양계산업은 미처 자라기도 전에 찬바람을 쐬어 감거나 폐렴에 걸려 중태에 빠지거나 동사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서운 찬바람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막고 있나를 연구하여 미리 준비를 하므로써 면화나 소맥에서 경험한 쓰라림을 되밟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어려서 우리가 읽은 동화 "성냥파는 소녀"의 교훈을 양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 영 한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2. 양계산물의 국제무역 동향과 세계각국의 농축산물 국경보호조치

가. 양계물 무역동향

주요 계산물 수출국은 다음과 같다.

계란-미국, 호주, 중국, 남아연방

계육-미국, 태국, 불란서, 화란, 브라질, 중국, 헝가리, 남아연방

이들 수출국중 미국의 닭고기와 계란(액란 난분등), 호주의 계란, 태국, 브라질, 중국의 닭고기 등이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들로 예상할 수 있다.

나. 세계 각국의 농축산물 국경보호조치

농축산물은 일반제조산업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세계각국은 투자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보존 등 안보차원에서 자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농축산물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땅콩 생유 버터등 13개 품목을 "웨이버 품목"으로 지정하여 30년 가까이 수입제한.

식육수입법으로 쇠고기, 양고기에 대하여 수입을 조절.

○EC-EC내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에 20년이 소요되었고 지금도 공동농업정책에 의해 국경보호조치 강구.

EC내의 지지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가변과징금으로 징수하여 실질적인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과징금과 관세수입을 재원으로 EC내 농축산물의 가격지지와 농축산물 수출보조.

모든 낙농품과 그 가공품 생가축 식육과 그 가공품, 계란과 그 가공품에 수입규제

○북구제국-나라마다 약간 다르나 모든 가축 가금 및 축산물 수입규제 자국어에 의한 라벨 첨부 의무

○뉴질랜드-일부 낙농품 수입규제

○호주-소맥, 소맥분, 버터·치즈 원당 양육 우유 계란 건조과실 포도주 브랜드의 국영무역

○일본-수입할당, 정부(축산사업단포함)에 의한 일원 수입, 약국간 협정에 의한 일정물량수입. 각종 관세부과,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각종임시조치법, 일본농산물표준규격(JAS) 모든 행정적장치 총동원. 국민여론동원, 대외 협상에는 충분히 검토 회의적

검토로 확대회피.

쇠고기 유제품(밀크 및 크림(신선가공)프로세스 치즈) 우유 및 돈육통조림에 수입규제, 외국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불인정.

자유무역원칙을 주장하는 GATT도 현실적으로 농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완전 수입개방은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의 잔존수입제한 품목수

구분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베네룩스	이탈리아	계
품목수	1	27	4	46	3	5	5	6	5	8	110
농산물	1	22	3	19	1	4	5	5	2	3	65
광공업품	0	5	1	27	2	1	0	1	3	5	45

자료: GATT Doc. L/5090 주: CCCN 4단위 기준

3. 수입 규제 제도

가. 직접적 수입 규제

(1)자동승인제(Automatic Approval System=A. A제)

수입개방 품목임에도 ①수입담보금 ②결제방법 ③원산지 선적지 표시로 외교관계 없는 지역 수입 제한. ④특수한 경우 사전 허가(감시품목 지정) ⑤내국세부과(일본은 수입가구에 물품세부과)

(2)수입 수량 할당제(Import Quota System=IQ제)

직접적으로 수입수량 제한. 수입수속 번잡

(3)자동 수량 할당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AIQ제)

실질적으로는 A.A 형식적으로는 IQ.

(4)수입기관지정

간접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축협이 우유 수입, 조달청구입, 농협, 농축산물 유통공사 등으로 창구일원화

(5)관세장벽

(6)부가금 제도

○수입 부과금(Levy)

○수입 과징금(Import Surcharge)

○수입 부가 관세(Import Surtax)

간접적 수입규제(Non tariff barriers) 비관세 장벽 (N.T.B)

- 관세평가
관세평가관에 재량권을 주어 수입품의 가격을 평가하여 과세
- 관세분류
수입품의 항목분류에 따라 세율의 차가 크다.
- 세관수속
통관수속전에 관련부처의 확인 또는 허가를 얻어오도록 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각종 첨부서류 요구. 형식주의 권위주의적 관료 제도 활용
- 각종규격기준
제품규격, 검사기준, 안전기준, 위생기준 규격 및 품질표시기준 각종 표준규격 포장규제
- 각종검사수속
- 국영-또는 준정부기관을 통한 조달정책
공익등 명분을 세워 공공기관 통해 조달
- 각종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 금융시스템(표준결제방법등)
- 영사관 사전 확인
- 과다한 수입서류 제출 요구
- 수출 자율 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발동가격제(T.P.M Triggge Price Mechanism)
기준가격제(B P S Basic Price System)
- 쌍무쿼타
- 사전 Technical Visa제 실시
- 각종 비용
사전공탁제도, 항만세, 통계세, 차별적 사용세, 국경세, 검역수수료, 검사비
- 수입카르텔
수입업자들로 조합 협회를 조직케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 물량조절
- 국산품 우선조달정책
- 샘플검사
- 국내가격정책(이중가격제)
- 상표(Labeling Requirements)

- 문화 상관습(Cultural Business Practices)
- 유통구조(Distribution system)

4. 일본을 중심으로한 외국의 수입규제 사례

가. 각국의 수입규제 사례

○미국

84~85년에 300건이 넘는 보호무역주의 입법이 의회에 제출

공정한 무역의 구현을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의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된다.

미통상법 301조를 적용 선별적인 보복조치(반덤핑, 특허권 상표보호, 보조금 지원 수출 등)

○EC

단일경제권형성으로 EC의 국가에 배타적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각

○프랑스

VTR(일제)통관수속을 내륙에 있는 프와티에(Poitier)세관 1개소에 국한

○일본

일본의 수입관리는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1949)을 기본으로 하나 실제수속은 대폭적으로 위임입법방식을 채용, 정령이하 성령고시등에 정해져 있다.

<수입무역 관리관계 법령>

생략

<수입 카르텔관계 법령>

①수출입 거래법(1952)

특정 선적지에 있어서 수입경쟁이 과다한 경우 등으로 수입거래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수입업자간 가격 수량 등에 대해 협정체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통산상의 승인의무를 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타 NTB에 활용되는 법률들>

(각 분야에 걸쳐 25개의 법률이 있음)

①농업기준법

13조에 농업보호를 위해 관세율조정 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②식량관리법

③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④식품위생법

판매용으로 공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

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상의 허가를 요한다(16조2)

⑤식물방역법

⑥동물검역법

수입금지지역을 정하고 검역제도로 수입규제

〈수입 관리 기구〉

통산성 대장성 세관 일본은행이 있는데 이중 세관은 조직으로는 대장성에 속해있지만 확인업무에 있어서는 통산성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외에 동성에서 위임된 업무도 본다.

〈수입무역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관련 수입승인제도〉(수입공표 2호)

일정지역에 한한 수입제한을 필요로 할 경우 특정화물의 수입에 대해 통산상의 수입승인을 요구한다.(명분은 이국간 협정등의 국제적 약속의 이행 위해, 예 고래, 원당, 커피, 수산물, 생사 등)

〈수입 확인 제도〉(수입공표 3조)

수입절차를 밟기전 주무장관의 사전확인파 통관시 확인으로 나누는데 수입의 감시, 국내법의 실효성 확보, 수입 할당제 등의 보완 조약등의 국제약속의 이행을 위해 만들었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수입보고제와 사후심사제도〉

명분- 수입실태를 조기 파악키 위한 수입 통계 작성. 은행을 통해 통상산업상에 제출하고 은행은 이 보고서에 의해 지불등의 확인을 행한다.(수입무역 관리규칙 별표Ⅱ)

〈특수결제 제도〉

수입거래질서의 유지란 명분하에 특수결제에 의한 수입의 경우는 통산상의 승인을 요한다. 통산상은 사전에 대장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규격기준 및 인증제도〉

인류 동물의 보전 및 소비자의 이익과 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생산물품의 질 생산방법 및 기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정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일정한 표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인데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수입규제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운용면에서도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제도를 잡자기 그리고 자주 변경하여 수출국으로 하여금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준비를 하게하여 수출비용을 증가시킨다.

수입국에 대해 자체검사 뿐만 아니라 현장검사까지 받게하여 수출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백화점 대량판매점에서 JAS규격에 의한 검사를 한다. 이에는 25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 (1)소비생활용품 안전법
- (2)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계량법
- (4)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 (5)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 (6)가축전염병 예방법
- (7)식물방역법
- (8)가축개량증식법
- (9)영양개선법
- (10)약사법(동물용 의약품)
- (11)식품위생법
- (12)노동안전위생법
- (13)공업표준화법

일본에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제도는 타국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형식승인은 수입업자에 게만 주어지고 제품보증책임은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수출입 거래법에 의한 규제〉(잠재적 또는 부차적 수입제한효과)

①수입업자의 협정(거래법 7조의2)

○특정지로부터 수입경쟁이 외국의 사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거나 일본수입업자가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정부간 협약등에 의해 특정지로부터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자원개발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품의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수입조합(19조4항)

○수입에 관한 시장조사 등

○수입화물의 가격 품질 등의 개선

○수입에 관한 분쟁처리

○이에 부대되는 사업과 협정이 인정될 경우 조합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단체협약을 체결

③수입거래에 관한 명령(30조)

협정이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실효를 얻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정령이 정함에 따라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자는 1년 이내에 수입금지조치를 한다.

나. 일본의 관세할당제 특수관세제도

(1) 관세할당제도(TQ) (관세 정 율법 8조 6의 5 항)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중세율을 설정하고 일정수량 내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율관세율(1차세율)을 이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2차세율)을 적용 예, 생우(300kg이하 / 두 이하의 것) 1차무세 2차 두당 45,000엔(71.10 AA, 72.4 시행)

어분 1차무세 2차 17엔/kg

옥수수 1차무세 또는 10%, 2차 15엔/kg

명분은 수요자 생산자 보호

(2) 특수관세 제도

특정화물의 급격한 수입증가 부당렴매수입 또는 보조금수입 등에서 국내업자 보호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

○반덤핑 관세제도(관세정율법 9조)

정당가격과의 차액범위내에서 할증관세 부과

○상계관세제도(8조)

외국의 보조금수출일 때 보조금내에서 할증관세

○진급관세제도(9조 2)

국제가격 상승예상 등으로 수입금지시 국내 적정도매가격과 통상의 관세부과후의 가격과의 범위내에서 할증관세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이 목적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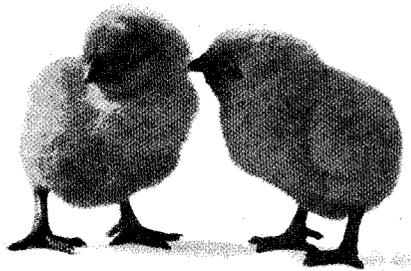
○복관세제도(6조)

○보복관세제도(7조)

○대항관세제도(9조 2) (계속)

위탁 부화합니다

(자가 종계 육계업자 환영)



- 완벽한 단열시설을 갖춘 건평130평 신축건물
- 치크마스타 부화기 입란능력 주 50,000개
- 최신 대우중공업 발전기 48kw 비치
- 운반차량 운행

연락처 이천축산 Tel 0336-32-6168